



#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외국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중국, 러시아 동포 고용 쉬워진다

양계농가에서의 인력문제는 결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도시화와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해 '90년대부터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양계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었고, 인건비 상승도 인력 수급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이 따르던 인력문제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농장(사용자)이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을 경우 원하는 동포(중국, 러시아)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외국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맞춰져 있으며, 연장 또는 재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 등 외국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강화는 물론 근로개시(고용)에 대한 신고(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도 따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산업연수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양계인들에게 취업의 문호를 개방해 왔다. 같은 해 8월에는 노동부에서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고용절차가 까다롭고 인력을 충원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양계분야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양계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생명을 가진 가축을 다루는 산업으로 하루라도 관리를 게을리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무하던 고용자(내국인, 외국인)가 예고도 없이 농장을 그만둘 경우 농장관리에 당장 문제가 되는 만큼 신청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기까지 기간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다행히 2005년 말 고용허가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국한되었던 외국인

고용특례제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업까지 포함되면서 양계장에서 다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나 이 또한 내국인 구인노력 등 최종 외국인을 고용하는데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가 이원화되어 운영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통합하고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농업분야는 농협에서 다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양계농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 한미 FTA 타결 그 이후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다.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TRQ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협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협상기간 동안 본회를 중심으로 신선란 및 닭다리 냉동품 등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사전 농림부에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결국 양계산물은 장기 15년 이내에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즉, 닭고기 통닭 및 냉동(가슴살, 날개)는 12년, 닭고기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닭고기 가공품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계란은 신선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 종란은 10년, 난백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냉장 닭고기는 보관기간이 짧아 미국의 신선육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냉동 닭다리 등 가공육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는 10-12년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란의 경우 정부에서는 가공품 및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품목들이 제과, 제빵용, 계맛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식품의 소비가 급증하지 않는 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정도의 국내 가공란 소비가 미국원료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식란의 경우도 미국의 산지 계란가격이 30원대까지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 한미 FTA가 완전 타결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수십개의 자문위원회가 협정문을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있다.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이번 협상을 기대 이하의 협상으로 간주, 협상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비준절차가 쉽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타결 이후 본회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폐업보상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계인들도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찬반여론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계업계를 정확히 직시하고 양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의 대안을 차근차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잊혀져 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위한 막바지 노력 한창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3월 8일 천안에서의 발생을 끝으로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청정화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지금까지 계획대비 70%인 480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발생지인 안성과 평택지역의 일부농가에서 평가가 완료되면 살처분보상비,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비용 등 모든 지원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한 농림부는 전국 육용오리 농가중 3백㎡이상인 2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 조사는 오리의 경우 시에 감염되더라도 산란율저하 이외에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대책에 의뢰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청정화 지위확보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림부에 의하면 지난 3월 18일 오염지역내의 가금류의 살처분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천안지역의 이동제한이 5월 8일 모두 해제 될 예정이며, 이후 시험사육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6월 19일 부터 발생농장에 입식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청정화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발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6월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화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발생지의 최종 살처분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이후 1달동안 더 이상 발생이 없을 경우 위험지역(3km이내)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후 최초 발생농장에 입식을 위해서는 21일간의 입식시험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시 21일간의 검역원의 정밀 검사 후 최종 입식을 결정하고 청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양계**